

1. 개정이유

감염병예방법 제39조의3의 “접촉자”가 “감염병의심자”로, 법 제40조의 “의약품 및 장비” 및 “의약품 및 장비 등”과 법 제40조의4의 “의약품 및 장비 등”, 법 제40조의2의 “의약품”, 법 제40조의3의 “의약외품, 의약품 등”의 명칭이 각각 “의료·방역 물품”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명칭을 “의료·방역 물품”으로 동일하게 변경하고, 법률에서 위임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을 정하며,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(의료기관)의 범위를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법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(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)

나. 용어 정리(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)

나.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(안 제35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마목”을 “바목”으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)”을 “(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28조를”을 “제28조제2항을”로 한다.

제31조의3의 제목 “(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)”을 “(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(이하 “접촉자”라 한다)”를 “감염병의심자”로, ““접촉자 격리시설””을 ““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”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접촉자”를 각각 “감염병의심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접촉자와”를 “감염병의심자와”로, “접촉자의”를 “감염병의심자의”로 한다.

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의약외품, 의약품 등”을 ““의료·방역 물품 중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른”을 “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
 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
 - 다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
 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 - 마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3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4.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
 - 나.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
 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) ① (생 략)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 소”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 한다. 1.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 른 약국(이하 “약국”이라 한 다)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. 4. (생 략)	제8조(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1. 2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제28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)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「의료 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<u>마목</u> 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. ② (생 략)	제28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바목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30조(<u>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</u>) 법 제37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<u>제28조</u> 를 준용	제30조(<u>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절차</u>) ----- ----- ----- <u>제28조제2항을</u>

한다.

제31조의3(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)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(이하 “접촉자”라 한다)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접촉자 격리시설”이라 한다)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 략)

3. 음압병상을 보유한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, 접촉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

4.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인구, 지리적 여건,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, 격리기간 동안 접촉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1조의4(수출금지 등)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“의약외품, 의

---.

제31조의3(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) ① -----
----- 감염병의심자-----

“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”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 감염병의심자-----

4. 감염병의심자 -----

--

② -----
----- 감염병의심자
와 -----
----- 감염병의심자
의 -----
-----.

제31조의4(수출금지 등) -----
----- “의료·방역 물

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35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

2.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

품 중 -----

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따라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----
---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
활급여 수급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

다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에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③ (생 략)	<u>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</u> <u>은 사람</u> <u>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</u> <u>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</u> <u>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</u> <u>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</u> <u>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</u> <u>마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</u> <u>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</u> <u>급받는 사람</u> <u>3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</u> <u>른 수급권자</u> <u>4.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</u> <u>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사람</u> <u>가.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</u> <u>만 65세 이상의 노인</u> <u>나.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</u> <u>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</u> <u>에 따른 장애인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	--